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0-35호)

Q&A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사업

Q 대기업 소속 단위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집단 소속회사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기업집단정보포털 ▶ 대규모기업집단 ▶ 지정현황 ▶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Q 지원한도 금액이 사업장(단체) 단위인가요? 프로그램 단위인가요?

➔ 지원한도는 사업장(단체) 단위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숫자와는 별개로 사업장(단체) 단위 한도입니다.

Q 단체 소속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있나요?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 신청상의 편의를 위해 단체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단체의 경우도 300인 미만 사업장들이 모여진 단체가 대상입니다.

Q Type1-2(협력업체 지원형)인 경우, 규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① 모기업 규모가 300인 이상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만 대상이 됩니다.

※ 모기업이 300인 이상이므로 모기업 근로자에 대한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기업은 관리를 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② 모기업 규모가 300인 미만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모기업이 300인 미만이므로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활동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접수기간 및 기타

■ 접수기간

2012. 1. 20(금) ~ 재원 소진시 까지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제안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초기화면 ▶ 사업신청안내 ▶ 용자보조 ▶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 문의처 및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TEL. 02-828-1671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5층

부산지역본부 TEL. 051-520-0587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지 26

대구지역본부 TEL. 053-609-0545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경인지역본부 TEL. 032-570-7264

인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광주지역본부 TEL. 062-949-8732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빌딩 8층

대전지역본부 TEL. 042-620-563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비용지원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안내

건강한 근로자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및 단체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단체

- 추진형태별 건강증진활동 모델

모델		모델구성의 예
Type 1 (사업장)	Type 1-1 (사업장 단독추진형)	300인 미만 단위 사업장
	Type 1-2 (협력업체 지원형)	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 협력업체 사업장
Type 2 (단체)	Type 2-1 (유사업종 연합형)	택시조합, 화물자동차 조합, 음식업협동조합 등의 소속 사업장
	Type 2-2 (지역 연합형)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지역단위의 중소기업단체 소속사업장

신청요건

■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있는 경우
➔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협력업체 지원형(Type1-2)인 경우
➔ 상호 합의하여 모기업에서 신청

■ 단체

- 기 구성되어있는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
➔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체인 경우
➔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

-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비만관리, 영양개선 프로그램 등)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건강 예방활동
(관계갈등개선,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등)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요통예방체조, 스트레칭기법 프로그램 등)
-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활동
(금연, 절주, 운동, 영양 프로그램 등)
-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업무적합성평가 등
사업장(단체)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 구체적인 콘텐츠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강증진활동 예시" 참조

■ 공단 지원사항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컨설팅비, 외부 전문교육과정 참가비,
장소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u-Health care 비용 포함), 금연보조제
구입비, 간이검사 재료비, 교재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하는 항목

※ 단, 자산취득비용·현물제공비용·재료비 구입 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 참조

• 지원한도

구분	사업장(단체) 규모		
	50명 미만	50명~300명 미만	300명 이상
지원한도	160만원	700만원	2,000만원

※ 300명 이상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